

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 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8. 12. 19
시민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12월 17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8년 12월 1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58회 정기회 제12차 위원회 ('98. 12. 19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윤희용 청소행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 주민자율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활성화 하고자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제를 신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(안제41조 제1항)

무단투기행위 신고방법, 절차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, 금액, 지급절차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(안제41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- 동 조례(안)의 주요골자는 안 제41조에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, 무단투기 행위의 신고방법·절차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·금액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.
- 그동안 구·동에서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나, 공터 및 이면도로 등 무단투기 취약지역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, 또한 무단투기 행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므로 단속원(단속반 운영 : 26개, 78명)이 야간까지 상주하여 단속에 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임.
따라서 주민 협조와 자율적인 감시기능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주민신고 포상제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.
- '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우리구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현황을 보면, '95년도 부과건수와 금액이 945건 43,900천원(징수율 89%), '96년도 931건 45,645천원(징수율 88%), '97년도 2,200건 89,835천원(징수율 78%), '98년 11월말 현재 2,681건 118,550천원으로 무단투기 적발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와 과년도 미징수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

- 질의요지(박상수 위원) :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?

- 답변요지(윤희용 청소행정과장) : 건당 만원임. 금액은 적으나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무단투기를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함.
- 질의요지(박상수 위원) : 금액이 적지 않은가?
- 답변요지(윤희용 청소행정과장) : 효과가 있으면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음.
- 질의요지(이종일 위원) : 환경미화원이 야간작업을 하지 않고 주간작업만 함으로써 앞으로 야간에 감시원 역할을 못하게 됨으로써 무단투기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포상금을 늘리는 것은 어떤지?
- 답변요지(윤희용 청소행정과장) : 예. 검토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년월일 : 1998. 12.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쓰레기무단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 주민자율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활성화 하고자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제를 신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(안제41조제1항)
- 나. 무단투기행위 신고방법, 절차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, 금액, 지급절차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(안제41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지방자치법(1995.12.29 법률 제5069호)제15조
- 폐기물관리법(1998.2.28 법률 제5529호)제7조
- 폐기물관리법 시행령(1998.2.28대통령령 제15734호)제5조

나. 예산조치 : 예산편성조치 필요

다. 합의 : 기획예산과와 예산합의

라. 기타사항 : 없음

첨 부: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제7장 보칙”을 “제8장 보칙”으로하고,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제42조 및 제43조로 하며,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장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제

제41조(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지급)①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고인은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방법, 절차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, 금액 및 절차등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

(신 설)

개 정 안

제7장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제

제41조(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)

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, 신고인은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방법, 절차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, 금액, 기급절차 등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장 보 칙

제41조(준용규정) (생략)

제42조(시행규칙) (생략)

제8장 보 칙

제42조 (준용규정) (현행 제41조와 같음)

제43조 (시행규칙) (현행 제42조와 같음)